

2010년 농수산물정책, 이렇게 달라진다!

농림수산물정책부는 2010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물정책을 발표하였다. 본지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농축산분야의 주요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.

주요내용

- 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
- ② 농지매입·비축사업 신규 추진
- ③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
- ④ 농어촌정비사업 추진절차 개편
- ⑤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
- ⑥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
- ⑦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
- ⑧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, 해양레저시설, 태양광·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.

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가 부채기준을 완화하고, 부채 대비 지원배수를 조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한다.

- 지원 대상인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기준을 '부채 4천만원 이상' 에서, '3천만원 이상' 으로 완화되고, 부채 대비 지원 배수는 '부채 규모의 1.2배 이내' 로 운영하고 있으나, '1배 이내' 로 변경된다.

※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: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,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

②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 매입·비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.

-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·비축하여(2010년 약 500ha) 후계 농업경영인,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된다.

-이를 통해 고령농 등의 은퇴·이농이 쉬워지고, 새로운 경영체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③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·일원화하는 한편,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한다.

-재해보험 대상은 농작물에서 가축·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확대되며,

-대상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·야생동물 피해·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④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며, 농어촌 경관보호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.

-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확대되며, 농어촌 관광휴양단지·관광농원·농어촌민박 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.

-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로 이양되고, 사업 추진기간 단축을 위해 20만㎡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권한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권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로, 시·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이양한다.

- 아울러,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시 농어촌경관관리 계획 수립,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·산업단지 설립 제한,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점유·사용한 경우 무단점용료 부과*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.

※무단점용료 부과 관련 규정은 2010. 6. 10일부터 시행

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이 강화된다.

-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2009년 최대 394천원에서 2010년 최대 427천원으로 확대되고,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2009년도 475억원에서 2010년도 505억원으로 확대된다.

- 고령·영세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.

※질병·사고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

- ① 규모확대 : (2009) 13천가구 → (2010) 15천 가구
- ② 요건완화 : 70세 이하 신청가능 → 75세 이하 신청가능

※가사도우미 지원 대상 : 고령가구 등 → 다문화가정까지 다양화

※이민 여성 농업인 단계별 영농교육 확대 : (2009) 700명 → (2010) 1,000명

- 아울러, 농어업인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·질병에 대하여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액은 2009년 321억원에서 2010년 332억원으로,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액은 2009년 8억원에서 2010년 12억

원으로 늘어나게 된다.

⑥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여 경영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어온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된다.

- 농협중앙회에서 조합별 지원한도액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,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 희망물량을 조사한 후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.

※방법 :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농가별 적정 비중 추천(시·군 농업기술센터) → 지원물량 신청(농가) → 농가별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지원물량 확정(농협) → 일괄 입찰·구매(농협) → 맞춤형 비료를 지역농협·마을에 공급(비료업체)

⑦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당초 374천명에서 512천명으로 138천명 늘어나게 된다.

-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초·중·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우수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⑧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.

- 「마리나 항만 조성·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
- 2010년 4월 23일부터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관광지·관광단지외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의 바닥면적과 층수가 완화된다.

- 남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태양광,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.